

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4년 06월 07일

홍은제2동장 인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 조치 사항 직권 조치 일자
강 *국	강 *국 1965-05-08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나길 (홍은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5-27
조 *범	조 *범 1967-09-29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7길 (홍은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5-27